

서울특별시의회  
제158회 임시회

-2005년도 제1회 지하철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(안)-

# 검 토 보 고 서

2005. 9. 5.

교 통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-2005년도 제1회 지하철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(안)-

# 검 토 보 고 서

# I .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

## 1. 제안경위

-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의안번호 : 제779호
- 제출일자 : 2005. 8.19
- 회부일자 : 2005. 8.25

## 2. 예산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  | 추경예산(안)<br>(A)         | 기정예산<br>(B) | 증감<br>(A-B)           | 비고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세입예산 | 1,002,500              | 912,000     | 90,500                | -   |
| 세출예산 | 500,918<br>(채무 82,400) | 410,418     | 90,500<br>(채무 82,400) | ·9호선 : 77,000<br>(채무 82,400)<br>·3호선 : 13,500 |

※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차액 5,015억 8,200만원은 도시철도공채매출금으로 교통 시설특별회계에 계상하였으며, 채무부담액 824억원은 별도 계상함.

### 3. 편성사유

-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도시철도건설사업비 추가경정예산(안)의 편성사유는
  -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건설계획에 의거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대한 시비부담액과 2008년 완공을 위하여 연말까지 필요한 추가소요예산을 반영하였고 (채무부담행위 824억원 별도)
  - 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 사업의 경우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에 시비부담액을 반영하였음.

### 4.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

- 세입
  - 세입추경예산(안)은 기정예산 9,120억원보다 905억원(9.9%) 증가한 1조 25억원임.
  - 구체적으로는 2004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미반영된 133억 8,800만원 및 일반회계전입금 771억 1,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.

(단위 : 백만원)

| 회 계 별     | 추경예산 (A)  |      | 기정예산 (B) |      | 증감 (A-B)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
|           |           | %    |          | %    |          | %    |
| 합계        | 1,002,500 | 100  | 912,000  | 100  | 90,500   | 9.9  |
| 순세계잉여금    | 55,971    | 5.6  | 42,583   | 4.7  | 13,388   | 31.4 |
| 일반회계전입금   | 265,548   | 26.5 | 188,436  | 20.7 | 77,112   | 40.9 |
| 잡수입       | 4,743     | 0.5  | 4,743    | 0.5  | -        | -    |
| 국고보조금     | 174,656   | 17.4 | 174,656  | 19.2 | -        | -    |
| 도시철도공채매출금 | 501,582   | 50.0 | 501,582  | 55.0 | -        | -    |

○ 세출

- 세출추경예산(안)은 기정예산 4,104억 1,800만원보다 905억원 (22.1%) 증가한 5,009억 1,800만원임.(채무부담행위 824억 별도)
- 주요내역을 보면,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로 국고 200억원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 300억원 및 연말까지 추가소요예산으로 시비 470억원과 채무부담행위 824억원 반영편성
- 3호선 연장 건설사업비는 국고 90억원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 135억원을 반영편성

(단위 : 백만원)

| 회 계 별          | 추경예산<br>(A)            | %    | 기정예산<br>(B) | %    | 증감<br>(A-B)           | %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합계             | 500,918<br>(채무 82,400) | 100  | 410,418     | 100  | 90,500<br>(채무 82,400) | 22.1 |
| <b>건설사업비</b>   | 483,732<br>(채무 82,400) | 96.5 | 393,232     | 95.8 | 90,500<br>(채무 82,400) | 23.0 |
| 9호선 1단계구간 건설   | 431,750<br>(채무 82,400) | 86.1 | 354,750     | 86.4 | 77,000<br>(채무 82,400) | 21.7 |
| 3호선 연장건설       | 50,000                 | 10.0 | 36,500      | 8.9  | 13,500                | 37.0 |
| 7호선 연장건설       | 1,512                  | 0.3  | 1,512       | 0.4  | -                     | -    |
| 9호선 2단계 기본계획용역 | 470                    | 0.1  | 470         | 0.1  | -                     | -    |
| <b>건설관리비</b>   | 12,664                 | 2.6  | 12,664      | 3.1  | -                     | -    |
| 기본경비           | 12,374                 | 2.5  | 12,374      | 3.0  | -                     | -    |
| 경상경비           | 290                    | 0.1  | 290         | 0.1  | -                     | -    |
| <b>예비비</b>     | 4,522                  | 0.9  | 4,522       | 1.1  | -                     | -    |

## II. 검토의견 (전문위원 : 윤병국)

2005년도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### 1. 우선, 추경예산(안)의 총액규모와 증액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,

- 2005년도 지하철건설본부의 추경예산(안)의 규모는 기정예산 9,120억원 보다 905억원(9.9%) 증가한 1조 25억원임.
-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는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 및 3호선 연장 건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금년도 부족사업비 등을 증액편성한 것임.

### 2.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

- 세입예산안
  - 순세계잉여금 559억 7,100만원(133억 8,800만원 증액, 31.4%), 일반회계전입금 2,655억 4,800만원(771억 1,200만원 증액, 40.9%), 잡수입 47억 4,300만원, 국고보조금 1,746억 5,600만원, 도시철도공채대출금 5,015억 8,200만원을 합한 1조 25억원임.

○ 세출예산안

-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은 총 770억원(기정예산대비 21.7%, 증)이 증가된 4,317억 5천만원이나 채무부담행위액 824억원을 포함하면 당초예산대비 44.9% 증가된 5,141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세출규모가 증대된 것임.
- 그 주요내용을 보면, 민자구조물 인도조건 이행사업비 560억원, 인천공항철도 개통대비 사업비 30억원, 채무부담액 824억원이 포함된 공구별 추가사업비 1,004억원 등임.
- 지하철 3호선 연장 건설사업은 공사비 133억원, 감리비 2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여 총 500억원으로 편성하였음.

3. 다음은 주요사안에 대한 의견입니다.

-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는 2004년도 본예산 편성후 2005년 1월 국고 200억원이 추가내시되어 시비부담금 300억원과 추가소요예산 470억을 합한 770억원을 추가편성함.
- 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 사업비의 경우에도 국고 90억원이 추가내시되어 시비 135억원을 추가편성한 것임.
- 따라서 동 추가경정예산(안)은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른 시비 편성을 통하여 지하철 9호선의 건설사업과 3호선의 연장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공사를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나 편성사유가 타당하다 사료됨.

- 그러나 지하철건설비 국고 및 지방비 부담비율이 4:6인 점을 감안하면,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200억원의 추가내시에 따라 시비부담분이 300억원이어야 하지만 이에 대하여 추가로 470억원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하철건설비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 부담비율 4:6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.
- 이러한 현상은 시비의 세출규모를 가중시켜 자치단체의 재정구조에 부담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고와 지방비의 부담비율에 대한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- 아울러 지하철 건설과 같이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장기계속사업의 경우, 시비의 선투자가 이루어지고 장기간에 걸쳐 투자된 부분에 대하여 국비가 지원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관리가 요구됨.
- 또한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의 경우, 시설비에 채무부담행위 824억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의 44.9%에 해당하는 1,594억을 증액편성한 것은 본예산편성당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.
- 채무부담행위는 당해연도의 재원형편상 세출예산이나 계속비에 계상하지 못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예산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하여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.

- 그러나 채무부담행위는 부채를 통한 투자재원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추후 원리금 상환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고, 무엇보다도 그 부담을 미래로 전가하는 일명, 외상공사라는 점에서 향후 채무부담행위는 최소화 되어야 함.
- 따라서 채무부담행위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이 주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하철 건설과 같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장기계속사업의 경우, 채무부담행위가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있음.
- 추경예산은 본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나 예산통제의 취약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가능한한 추경편성을 지양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철저히 분석하여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